

[별 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제10조제3항 관련)

1.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배점	평점					비고
			A	B	C	D	E	
정량 평가 (30)	① 업 력 - 법인설립일로부터 제안서 마감일까지의 업력	5	15년 이상 (5)	10년 이상 (4)	5년 이상 (3)	3년 이상 (2)	3년 미만 (1)	
	② 공인회계사 수 - 선정 해당연도 제출 마감일 기준 공인회계사 수 (수습 공인회계사 제외)	5	20인 이상 (5)	15인 이상 (4)	10인 이상 (3)	5인 이상 (2)	5인 미만 (1)	
	③ 신인도 - 최근 2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징계처분 사실 (법인기준)	5	0건 (5)	3건 미만 (4)	6건 미만 (3)	10건 미만 (2)	10건 이상 (1)	
	④ 주요 사업실적 - 최근 2년간 공공기관 회계감사 실적	15	10건 이상 (15)	8건 이상 (13)	6건 이상 (11)	4건 이상 (9)	4건 미만 (7)	
정성 평가 (70)	⑤ 투입인원 - 감사일정 중 투입인원 수, 구성원 등에 대한 상대평가	15	매우 적절 (15)	적절 (13)	보통 (11)	미흡 (9)	매우 미흡 (7)	
	⑥ 과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 감사절차, 일정, 인력운영 및 위험요인 대응계획 등	15	매우 적절 (15)	적절 (13)	보통 (11)	미흡 (9)	매우 미흡 (7)	
	⑦ 인력의 전문성 - 감사일정 중 투입인력에 대한 경력 및 경험, 자질 등을 상대평가	20	매우 적절 (20)	적절 (18)	보통 (16)	미흡 (14)	매우 미흡 (12)	
	⑧ 회계서비스 제공내용 - 회계 관련 자문서비스 제공계획 평가 - 개선사항 제안 및 사후지원 내용 등	20	매우 적절 (20)	적절 (18)	보통 (16)	미흡 (14)	매우 미흡 (12)	
합 계		100						

2. 평가 방법

가. 정량평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나. 정성평가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단, 최저·최고점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한다)

다.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고,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위원회의 투표를 거쳐 선정한다.